

기독교계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

손 원 영

서울기독교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요 약〉

본 논문은 기독교계 사립학교(이하, 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탐색하는 것으로서, 특히 최근 국회에 제출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시도하고 그 대안을 찾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기독교학교의 입장에 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주제를 고찰한다. 첫 번째의 연구주제는 종교교육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 초·중등학교에서 겪고 있는 갈등에 관한 것으로서, 교육목적의 갈등, 교육과정의 갈등, 교육제도의 갈등의 측면을 살펴본다. 우선 교육목적의 갈등 부분에서는 설립이념과 대학입시에 초점을 맞춘 교육목표 사이의 갈등의 문제가 다뤄진다. 교육과정의 갈등은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이 종교학적이고 교양교육적인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계로 신앙교육적 종교교육을 지향하려는 기독교학교들과 겪게 되는 갈등의 문제를 다룬다. 그리고 교육제도 상의 갈등은 평준화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검토된다. 두 번째의 연구주제는 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교육과 관련하여 최근 관련 학계의 기본적 방향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기독교학교가 학교교육의 두 전통 곧 종교 및 이성 사이의 조화의 전통에 따라 신앙과 이성 사이의 종합을 지향할 것과, 종교와 교육의 관계가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보적 관계임을 인식할 것, 그리고 종교교육 대상과 형태에 있어서 다양화 및 투명화의 필요성이 진술된다. 끝으로 세 번째의 연구주제는 앞서 고찰된 논의에 근거하여 현재 국회에 제출된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률안과 관련하여 기독교학교의 대응에 대하여 고찰한다. 여기서 연구자는 종교교육과 관련한 모호한 법조항들을 가능하면 속히 정리할 것과 함께, 교육당국은 향후 종교교육과 관련하여 이중 전략을 지향할 것을 제안한다. 그것은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정신에 따라 기독교학교에 대해서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고, 국·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종교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다.

핵심 주제어: 기독교계 사립학교, 중립학교, 종교교육, 초·중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갈등, 다양화

I. 머리말

최근 민주당의 신낙균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3인은 헌법 제20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사립학교가 특정종교 교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그 외의 교과목과 함께 편성하여 학생들이 종교과목 대신에 다른 과목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강제하려는 법안을 발의하였다(2008.8.21.). 이들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2항(종교과목 선택권 보장)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명시하고자 제시하였던 것이다. “사립학교가 특정종교과목을 개설하는 때에는 그 외의 과목을 포함하여 복수로 과목을 편성함으로써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개정 법률안의 배경설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몇 해 전 발생한 대광고의 강의석 군 사건 이후로도 학생인권보장의 차원에서 반강제적인 종교 수업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어왔음.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여전히 학교설립이념을 이유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4·15 학교자율화 조치로 인해, 종교교육과정 지도철저란 지침이 폐기된 상태.¹⁾

이러한 법안의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사)한국기독교학교연맹과 (사)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가 연합으로 2008년 9월 8일에 2009년에 개최되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 총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것을 총회에 청원한 것이다.

위 단체들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로서 다음과 같이 여덟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신낙균 의원 등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의 특성 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교육기본법 제25조’²⁾에 배치된다. 둘째, 종교과목은 종교계통 사립학교가 그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교과임으로서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셋째, 종교과목 개설시 복수과목편성을 법으로 강요하는 것은 사립학교가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넷째, ‘학생의 종교의 자유’ 못지않게 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다섯째, 개정안에 ‘종교교과목을 개설하는 때에는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게 하는 것’은 종교교과목만 복수선택제를 두는 것으로 타교과목의 단수선택과는 형편상 맞지 않는다. 여섯째,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서 교육부지침으로 종교과목의 복수선택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따로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일곱째, 제안이유로 설명한 ‘학교에서

1)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신낙균의원대표발의), 2008.8.21. (발의자: 신낙균, 이종걸, 박기춘, 양승조, 유선호, 김상희, 김희철, 안규백, 김춘조, 김동철, 최영희, 이용섭, 김우남 의원)

2) 『교육기본법』 제25조 (사학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의 종교의 자유'를 주장한 강의석 군 사건은 2008년 5월 8일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재심에서 패소하였다. 여덟째, 종교과목의 근원적인 문제는 197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교 평준화정책이 학교선택권과 학생선택권을 박탈하였기 때문이다.³⁾

이상과 같이 현재 종교계통 사립학교(이하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과 관련하여 새로운 법률안을 제안하려는 집단과 그에 저항하려는 단체 사이의 갈등이 첨예하게 맞선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과 관련하여 적절한 해결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를 고찰하기 위해 본 소고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가치중립이란 불가능하다는 전제 위에 종립학교 중 기독교계 사립학교(이하 기독교학교)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견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문제를 성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 종교교육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 기독교학교에서 겪고 있는 갈등은 무엇인가? 둘째, 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교육과 관련하여 최근 학계의 기본방향은 어떠한가? 셋째, 국회에 제출된 개정 법률안과 관련하여 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위해 보다 건설적인 제안은 무엇인가?

II. 기독교학교 종교교육의 갈등현상

현재 한국 기독교학교들이 종교교육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갈등현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그것은 교육목적과 관련된 갈등, 교육과정과 관련된 갈등, 그리고 교육제도와 관련된 갈등이다.

1. 교육목적의 갈등

교육이 제대로 이해되고 또 실천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가치론에 근거하여 교육의 목적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대의 교육은 바람직한 가치(value) 위에 세워진 교육이라기보다는 지나치게 객관성을 중시하는 과학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왜곡된 가치관과 그에 따른 잘못된 교육목적/목표를 절대화한 면을 부정할 수가 없다. 그 결과 우리는 현대 교육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외치는 대표적인 학자는 닐 포스트만(Neil Postman)이다. 그는 *The End of Education*(1995)이라는 저서에서 이러한 주제를 깊이 있게 밝히고 있다. 이 책의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이 책은 '교육의 종말(end)'이라는 의미를 '교육의 목적(end)'이라는 의미와 역설적으로 대비시켜 논의를 전개한다. 그래서 포스트만은 이 책에서 현대교육이 교육의 과학성만을 절대화하고 또 잘못된 철학적 토대 위에서 진행되어져왔기 때문에, 교육목적이 잘못되었고 그 결과 교육의 종언을 이루게 되었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을 반대하는 이유』(한국기독교학교연맹 및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2008.9.8).

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즉 잘못된 학교교육의 목적들이 우리 아이들과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 지구촌의 평화와 안녕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 포스트만이 비판한 현대교육의 잘못된 목적과 또 지향해야 하는 바람직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에 따르면, 우리의 교육을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간 잘못된 학교교육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학교에서만 잘하면 사회에서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경제적 가치로서의 학교교육’, 둘째, 많이 가진 자만이 결국 승리하게 되므로 자본의 축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도록 가르치는 학교교육의 ‘상업주의적 이데올로기’, 셋째, 비판적 사고방식이나 판단력을 교육하기보다는 문제에 대해 단순한 기계적 해결만을 강요하는 ‘테크놀로지의 무비판적인 교육에의 적용’, 넷째, 다양한 집단들의 조화와 통일을 강조하기보다는 각 집단의 차이만을 부각시키는 ‘분리주의 교육’이 바로 그것들이다.⁴⁾

이러한 비판에 근거하여 저자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목적으로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다양성의 존중과 상호의존의 세계관에 입각한 세계평화수호자로서의 인간성 교육, 둘째, 절대 진리의 맹목적 추구보다는 지식의 상대성과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지식관 교육, 셋째, 인류의 평화유지를 위한 다양한 집단 간의 논쟁을 중요시하는 교육, 넷째, 과거에의 과도한 집착을 통해 집단 간의 증오를 자극하기보다는, 다양한 문화들의 비판적 대화와 학습을 통해 상호의존의 지혜를 길러주는 교육, 다섯째, 소통가능한 인간성 창출을 위한 언어교육이다.⁵⁾

물론 이러한 포스트만의 주장은 미국 학교교육의 잘못된 교육목적을 비판하면서 바람직한 교육의 목적을 제시한 것이지만, 한국의 기독교학교 교육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기독교학교 역시 미국의 학교교육이 갖고 있는 교육목적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학교교육이 지나치게 실용적이고 상업주의적인 지식의 전달과 그에 따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왜곡된 교육목적을 절대화함으로써 미국 학교교육의 위기를 초래한 것처럼, 한국의 기독교학교도 이 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의 많은 기독교학교들은 비록 설립이념과 교육목적의 진술에 있어서 홍익인간이나 기독교적 인간의 형성이라는 교육목적을 명시적으로 훌륭하게 제시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많은 학생들을 소위 일류대학에 입학시키는 입시위주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박상진이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현재 기독교학교가 ‘하나님의 나라’로 요약되는 기독교학교의 교육목적과 지나친 입시경쟁과 학교폭력 등으로 요약되는 소위 왜곡된 교육현실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⁶⁾

4) Neil Postman, *The End of Education: Redefining the Value of School*(New York: Vintage Books, 1995), part I.

5) 위의 책, part II.

그렇다면 왜 기독교학교들은 기독교학교의 설립이념 및 교육목적으로부터 벗어나 입시 경쟁에 몰입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원인의 분석은 본 논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지만, 재능주의사회(meritocracy)에서 성공과 출세를 위해 재능을 키우고, 또 그것을 통해 부를 축적하여 왜곡된 '입신양명'이라는 세속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열망이 지나치게 기독교학교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달리 말해, 오늘날 한국사회의 지나친 교육열은 단순한 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열정 때문이 아닌 이러한 지위상승과 상층계층으로의 이동, 또는 기득권의 현상유지(status quo)에 대한 열망에 따른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⁷⁾ 따라서 기독교학교는 하나님의 나라로 불리는 교육목적의 회복을 위해 그러한 세속적 가치를 거부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현재 한국 기독교학교는 교육목적과 관련하여 볼 때 설립이념 및 교육목적의 구현과 물질만능주의 및 왜곡된 입신양명의 가치에 따른 현실적인 대학입시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금번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에 대한 논의는 기독교학교들이 대학입시라는 현실적 교육목표 때문에 그동안 소홀히 간주해 오던 학교설립 이념 및 교육목적에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에 대한 논의는 곧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의 논의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초·중등교육법의 개정논의가 기독교학교의 설립이념과 교육목적의 측면에서 전개되지 못할 때,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에 대한 찬반논의는 그 타당성을 잃은 채 자칫 이해집단 간의 다툼으로 왜곡될 수 있다.

2. 교육과정의 갈등

현재 기독교학교를 비롯한 종립학교의 종교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제6차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종교 교육과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고 종교교육을 통해 온전한 인격형성과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의 양육이라는 '교양교육'의 일환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데 중점이 있다.⁸⁾ 그러면 제6차 종교 교육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제7차 교육과정의 "교양 교육과정의 기본방향"⁹⁾ 속에 잘 반영되어 있는데,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과거의 종교 교육과정이 교양교육이라는 맥락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오히려 종단의 신앙교육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는 비판이다. 따라서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은 종단의 신앙을 주입하는 신앙교육적 성격보다 종교학적 성격을 강화함으

6) 박상진, 『기독교학교교육론』(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6), 78-79쪽.

7) 위의 책, 234쪽.

8) 유위준·정진홍·김윤성, 『종교』,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교양)』(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0).

9) 유위준·김영일, 『교양총론』,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교양)』(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0).

로써 교양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둘째는 과거의 종교 교육과정이 너무 지식 중심으로 설명되어 있어서 학습자들에게 매우 어려운 과목으로 이해되었다는 비판이다. 따라서 종교과목을 비롯한 교양교과들은 추상적인 특수 내용 및 용어, 고답적이고 혼계적인 내용이나 소재가 아니라, 학생들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나 쟁점을 소재로 교과를 구성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실용적인 내용을 제공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종교교과를 비롯한 교양교과들이 민족, 종교, 계층 성역할 등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사고하고, 특히 지식을 접할 때 비판적으로 사고하게 함으로써 잘못된 신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 특징이 있다. 이러한 진술은 종교 교육과정이 종교학적 접근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는 종교 교육과정이 학습자들의 개인적 관심과 흥미, 필요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고등학교까지의 수업이 그 자체로 '인격의 도야'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명실상부한 교양교육의 맥락에서 종교 교육과정을 접근하겠다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결국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은 건전한 인격도야를 위한 '교양교육'을 위해 '종교학적 접근'을 시도하려는 종교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드러난 것처럼,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의 특징은 종교학적 접근에 따른 교양교육의 맥락에서 개발된 특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은 기독교학교가 지난 100년 동안 견지해온 신앙교육적 종교교육과 엄청난 괴리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기독교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양 교육과정이라기보다는 신앙 교육과정이었으며, 종교학적 접근에 의해 개발된 교육과정이 아니라 성경 및 신학적 접근에 의해 개발된 교육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정교분리원칙을 강하게 고수하는 교육당국과 종립학교의 신앙의 자유를 강조하는 기독교학교 사이의 이러한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 말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금번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은 정부의 제7차 종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곧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더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학교는 이러한 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다시 한 번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현재의 기독교학교들은 제7차 종교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통적인 신앙교육과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교양교육 사이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3의 대안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학자들이 제시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활용, 종교성교육, 혹은 영성교육적 접근, 인문학적 교양교육화¹⁰⁾ 등은 하나의 대안으로 신중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10) 강희천, 『기독교학교의 종교 교육과정』, 『현대와 신학』 27(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2002); 박범석, 『교육의 종교성 회복을 위한 통합적 접근』(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김귀성, 『공교육에서 종교 교육의 개념모형 탐색』, 『종교교육학연구』 21권(한국종교교육학회, 2005); 고병철, 『한국 종교교육의

3. 교육제도의 갈등

20세기의 가장 두드러진 교육적 특징은 공교육제도의 발달과 의무교육의 강화였다. 실로 “교육의 세기”라고 불리는 20세기에는 학교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 인간의 삶의 오랜 기간을 학교교육으로 보내게 되었다. 급기야 교육과 학교에 다니는 것은 거의 동일시되었고, 학교교육은 모든 인간이 받아야 하는 권리이면서 의무가 되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과 관련하여 한국 교육제도 상의 주목할 만한 변화가 두 가지 발생하였다. 첫째는 1974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평준화제도이다. 평준화 제도는 기존의 사립학교들이 갖고 있던 학생선발권과 학부모들이 갖고 있던 학교선택권을 강제로 포기시키는 대신 학교운영과 관련된 정부의 경제적 지원과 지역 간 교육격차의 해소를 약속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평준화제도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종교교육과 관련해서는 국가와 종립학교 간의 근본적인 갈등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종립학교는 설립이념에 따른 종교교육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되었고, 학생들도 자신들의 종교와 상관없이 임의대로 학교를 배정받음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게 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그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소위 ‘자립형 사립학교’ 제도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평준화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이 시점에서 어떠한 형태이든 종교교육과 관련하여 평준화제도의 장단점 등에 대한 논의 및 보완이 요청된다.

둘째는 최근의 대안학교의 등장이다. 1990년대 한국의 학교교육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교실붕괴, 학교붕괴 등의 표현이 매스컴에 등장할 정도로 심각해지면서, 학교교육의 위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등장하였는데, 성적 위주의 학교교육은 학교부적응자를 생산해 내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학교를 중퇴하는 학생들이 수없이 늘어났다. 더욱이 다양한 학습욕구가 증가하여 실패 없는 학교, 경쟁보다는 협력, 수동적인 학습이 아니라 능동적인 자기주도 학습 및 개별화학습이 가능한 열린 학교에 대한 열망이 늘어났다. 그리고 특히 기독교학교로 출발하였으나, 정부의 반종교교육 정책으로 인해 기독교학교가 정체성의 위기를 겪자 최근 신앙교육의 자유를 외치면서 기독교신앙에 기반을 둔 많은 대안학교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학교의 등장은 정부에게도 큰 도전이어서 최근에 정부는 대안학교법의 제정을 통해 대안학교를 궁극적으로 제도권 속으로 수용하려는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종교교육과 관련된 교육제도의 변화는 앞으로 평준화제도를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의 여부와 함께, 대안학교를 가능케 했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어떻게 공교육 차원에서 수용할 것인지의 여부가 교육제도의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정황과 방향』, 『종교교육학연구』 21권(한국종교교육학회, 2005); 손원영, 「기독교계 중등학교에서의 종교수업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12집(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05) 참조.

Ⅲ. 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기본방향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방향과 관련하여 다양한 목소리가 관련 학계에 현존한다. 예컨대 고병철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즉 공공성 속의 자율성, 양심의 자유에 입각한 종교의 자유, 그리고 종교교육의 인문학적 교양교육화이다.¹¹⁾ 이러한 고병철의 지적에 기본적으로 공감하면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방향으로 네 가지를 보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학교교육의 두 전통과 조화

서구에서 학교교육의 발전은 “히브리와 헬라와의 만남”이었다라고 은준관이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¹²⁾ 학교교육은 아테네로 상징되는 철학적 유산과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영적-종교적 유산이 만나서, 두 가지 교육적 전통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창조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이성’을 중시하는 고대 그리스의 헬레니즘 전통에 따르는 소위 자유 7과로 알려진 내용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고, 또 하나는 초월적인 ‘신앙’을 중시하는 히브리사상에 따라 성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육이다. 전자는 인간 이성의 보편성에 기인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발달에 교육목적을 둔 보편성 지향의 교육이고, 후자는 실존적 인간 이해에 기초하여 인간구원과 신앙전수라는 종교적 사명을 강조하는 특수성 지향의 교육이다. 이 양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종종 갈등과 긴장관계를 맺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매우 긴밀한 관계성을 맺기도 하였다. 예컨대, 로마시대 기독교의 국교화와 함께 이루어진 유럽에서의 학교는 종교적 토대 위에서 발전하였고, 특히 중세의 학교는 거의 교회의 부속물로서 성직자의 양성과 신앙교육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13세기 도시의 발전과 함께 시작된 대학의 태동은 자유7과를 정규 교과목으로 정착시키면서 소위 헬레니즘 전통의 교육이 다시 부활하게 되었고, 종교개혁가인 루터는 국가가 관리하는 학교제도를 제창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학교발달의 역사에서 종교적 전통에 의해 설립된 학교들이 근대까지 주도적 역할을 해 왔으나, 18세기 근대국가의 시대에 이르러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것은 공공성의 이념의 대두와 함께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교육의 필요성이 등장한 것이다. 그래서 앞서 제시된 두 전통이 국가관리 체제로 통합되는 역사적 변화를 맞게 되는데, 그것이 곧 의무교육제도이다. 의무교육제도에 따라 학교가 국가에 복속됨으로써 학교교육이 본격적으로 종교로부터 독립되기 시작하였고, 그 운영도 국가의 주도로 이루어지게 되었

11) 고병철, 『한국종교교육의 정황과 방향』(한국종교교육학회, 2005), 128-133쪽.

12) 은준관, 『기독교교육현장론』(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312쪽.

다. 이러한 과정에서 헬레니즘 전통의 교육은 자연스럽게 국가체제에 편입되었으나, 특수한 이념과 목적을 가진 사학, 특히 종립학교의 교육은 공공성의 이념 하에서 그 자율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근대국가의 강력한 국가주의적 학교통제에 직면하여 종립학교가 지니고 있는 특수성을 보존하기 위해 종립학교들은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즉, 교회에 의해 설립된 학교들이 사회적 공공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아니 오히려 공공성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 왔음을 강조하면서, 종교성에 기인하여 나타나는 교육 이념적 특수성을 포기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¹³⁾ 따라서 종립학교는 공공성 제고에 관한 종교단체의 기여 인정 및 특수성 보전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법적인 대응을 비롯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이런 점에서 현재 교육기본법 제25조¹⁴⁾는 종립학교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그 종교적 전통을 존중할 것을 천명한 것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

결국, 기독교학교 교육의 발전은 이성중심의 헬레니즘적 교육 전통과 신앙중심의 히브리적 교육 전통이 어떻게 조화로운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민주국가에서 비록 국가가 학교교육에 전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학교는 공공성의 이념 안에서 자신의 종교적 특수성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법적 혹은 제도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종교와 교육의 상보적 관계

영어에서 ‘종교’라는 말은 ‘religion’이다. 이 말은 라틴어 ‘*religio*’에서 나왔다. 그 의미는 절대자에 대한 경외감(awe)이나 거룩함(sanctity)을 의미한다. 그런데 라틴어 ‘*religio*’는 다시 ‘*re-ligio*’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서 ‘*re*’는 ‘다시’(again)라는 의미이고, ‘*ligio*’(ligo)는 ‘묶다’(to bind together, connect, unite)라는 의미이다.¹⁵⁾ 그러므로 종교란 “다시 묶다”는 말이다. 즉 서양인에게 종교란 무엇인가? 그것은 절대자에 대한 경외감에 앞서서,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이다. 사분오열되어 있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묶는 기제가 종교인 것이다. 그렇게 서로 묶는 것이 절대자를 경외하는 것이요,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종교는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종교가 없다면 인간은 분열적 존재가 될 것이고, 사회도 갈등의 연속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종교는 사회적 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

13) 정일환·박재윤·황준성·문성모·신지수, 『종교계 사학의 전개과정과 발전방향 탐색: 가톨릭계 학교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25(한국종교교육학회, 2007), 276쪽.

1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 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어야 한다.”(『교육기본법』 제25조)

15) D. P. Simpson(ed.), *Cassell's Latin English Dictionary*(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7), p.132.

한 기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동양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가 사용하는 종교라는 말은 한자로 ‘宗教’로서, ‘마루 종’과 ‘가르칠 교’이다. 즉 ‘으뜸 가르침’이라는 의미이다. 말하자면, 가르침 중에서 최고의 가르침이 종교라는 의미이다. 결국, 서양이든 동양이든 종교는 본래의 의미에서 사회통합적 의미를 지닌 최고의 가르침이요, 인생 문제의 궁극적 가르침이라 말할 수 있다. 비록 종교의 의미가 현실 세계에서 많이 왜곡되어 사회적 분열의 요인으로 종종 작용한다 할지라도, 그 본래적 의미를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친다는 것은 사회통합을 위한 것이요, 사람들에게 참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종교가 왜곡되어 그 본래의 의미를 종종 상실한다 할지라도 종교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인류의 유산이다.

한편, 교육이란 영어로 ‘education’이다. 이 말은 라틴어 ‘e-ducare’에서 나왔다. 접두사 ‘e’는 ‘밖으로’(ex; from)이고, ‘ducare’는 ‘이끌어 내다’(lead out)라는 의미이므로, 교육은 각 사람들 내면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밖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다. 특히 낯선 타자에 의해 이끌어내지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potentiality)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곧 교육이다.¹⁶⁾ 이런 각도에서 보면, 교육은 어떤 내용을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주입시키거나 혹은 강요(indoctrination)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가능성이 현실화되도록 설득하고 격려하는 양육(nurture)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종교와 교육을 하나로 연결하여 ‘종교교육’¹⁷⁾이 될 때, 그 의미는 앞에서 이해한 종교와 교육의 본래적인 상보적 의미를 결코 상실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종교교육은 종교가 의미하는 통합적 의미와 궁극적 가르침의 가치를 굳게 견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교육의 의미가 갖고 있는 가능성의 현실화의 측면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종교교육은 특정한 교리나 신념을, 비록 그것이 궁극적 가치요 통합적 의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외부에서 학습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주입하는 것이 타당성을 얻을 수는 없다. 오히려 종교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그 궁극적 가르침에 이르도록 학생 내면에 있는 어떤 종교적 가능성을 자극하고 격려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종교교육은 결코 일방적인 주입식교육이 아니라, 자아의 초월을 향한 설

16) Dwayne Huebner, “Religious Metaphors”, *The Lure of the Transcendent: Collected Essays by Dwayne Huebner*, Edited by Vikki Hillis and Collected & Introduced by William F. Pinar(Mahwah, New Jersey: Lawerns Erlbaum Associates, 1999), p.361.

17) 사실 종교와 교육 사이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종교교육의 의미는 적어도 세 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첫째는 ‘종교의 교육’(education of religion), 둘째는 ‘종교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religion), 셋째는 ‘종교적 교육’(religious education)이다. 우선 종교의 교육은 중립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종교교육으로서 신앙교육적 종교교육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종교에 관한 교육은 제7차 종교 교육과정¹⁸⁾이 지향하는 종교교육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종교학적 종교교육을 의미한다. 그리고 종교적 교육은 ‘종교성’ 혹은 ‘영성’ 등의 함양을 추구하는 종교교육으로서 종교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격교육적 종교교육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범석, 『교육의 종교성 회복을 위한 통합적 접근』 참조.

득의 교육이요 낯선 것을 기꺼이 초대하는 ‘환대’(hospitality)의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¹⁸⁾

결국 종립학교에의 종교교육은 종교적 동기에 의해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교육적 원리에 의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즉 궁극적 삶을 위한 최고의 가르침인 종교적 가르침은 강요나 강제에 의해 시행되기 보다는 설득과 양육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 기독교학교의 종교교육을 볼 때, 종교교육은 그 동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종교교육은 이미 정해진 답을 외우는 주입식 교육의 행태로 종종 전락하였고, 특정한 신학적 내용이나 교리를 절대화한 채 다양한 신학적 논의를 거의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학교의 종교교육과 관련된 일련의 논의들은 차제에 보다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방향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종교교육의 대상과 형식의 다원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종교교육의 대상과 형식은 앞서 제시한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계를 활용할 때,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첫째는 보편성의 측면에서 일반인 모두를 염두에 둔 종교교육이다. 이것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종교교육으로서, 말하자면 ‘종교학적 종교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종교교육의 기본방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종교교육은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이성을 기반으로 하여 진행되는 종교교육으로서, 소위 ‘역사비판적 종교교육’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교육은 종교를 하나의 역사적 실체로 간주하여 그것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볼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써, 자칫 인간이 빠질 수 있는 종교에 대한 편견과 광신적 태도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둘째는 특수성에 기반을 둔 종교교육으로서, ‘신앙교육적 종교교육’이다. 이것은 일반인보다는 신자를 대상으로 한 종교교육으로서, 가치지향적인 종교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전제가 신앙을 가진 이를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의 종교교육은 특수한 신학적 입장에 선 일종의 신학교육이요, 신앙의 발달을 지향하기 때문에 신앙발달교육이요, 또 종교적 가치전파를 지향하기 때문에 선교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종교교육은 현재 한국 기독교학교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학교 종교교육의 문제는 이러한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어긴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 한국의 학교 종교교육은 일반인 곧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성을 추구하는 종교교육이 사실상 없다. 여기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종교교육이란 말하자면 ‘국·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의미한다. 지금 현재 국·공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종교교육은 연구자가 아는 한 단 한 곳도 없다. 헌법

18) Parker J. Palmer, *The Company of Strangers: Christian and the Renewal of America's Public Life*(New York: Crossroad, 1991), pp.56-70.

제20조 제2항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는 규정과, 교육기본법 제6조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종교교육 자체를 국공립학교에서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오히려 헌법의 위배이다. 왜냐하면 헌법 제31조 제1항(교육을 받을 권리)에서는 모든 국민이 교육받을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⁹⁾ 교육받을 권리 속에는 종교교육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다만, 문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의 초·중등학교에서, 특히 국·공립학교에서는 반드시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특정한 종교가 아닌 보편적인 차원에서, 인류 공통의 정신적 유산인 종교를 가르치는 종교교육이 요청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 희망적인 것은 최근 정부가 국·공립학교 교사 임용고시를 위해 교사자격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종교교사를 위한 기본적인 자격기준안’²⁰⁾도 마련한 점이다. 이것은 향후 국·공립학교에서 이루어질 종교교육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의 학교 종교교육은 신자를 대상으로 한 특수성을 배려하는 종교교육이 없다. 여기서 신자를 대상으로 종교교육이란 기독교학교의 경우 기독교인만을 대상으로 한 종교교육,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비록 기독교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독교신앙에 관심을 가진 이를 위한 종교교육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수성을 배려하는 종교교육은 현재 한국 초·중등학교에 엄밀한 의미에서 없다. 비록 현재 다수의 종립학교에서 그들의 전통에 따라 신앙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것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종교교육의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종립학교는 자유롭게 자신들의 신앙양심에 따라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유를 얻어야 한다. 만약 이것을 얻지 못할 경우, 과연 종립학교의 존재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헌법 제20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은 종립학교가 자유롭게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헌법적 규정이 된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은 사학에서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허용한 규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사학에서의 종교교육은 제한적이지만 자유라는 의미이다. 더욱이 교육기본법 제2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 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학정신에 따른 종교교육을 존중할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위와 같은 법정신을 살려서 사립학교들이 공공성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19)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0) 이것은 2008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후원과 위탁에 따라 한국종교교육학회가 공동연구를 시행하였다. 이때 연구된 주제는 김귀성, 『현행 종교과 교사양성의 실태와 개선방안』, 손원영, 『종교교사 자격기준과 선발의 과제』, 박범석, 『종교과 중등교원 임용시험 평가영역 상세화 과제』, 최종성, 『종교교사 1차 시험의 출제 및 평가영역』, 그리고 이재일, 『종교교사 논술형 및 수업능력 평가도구의 개발』이다. 자세한 것은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사 양성과 평가의 과제』(2008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08.5.23.) 참조.

종교교육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혹자는 기독교학교를 포함한 종립학교들이 공교육의 범위 안에 있고 더욱이 정부로부터 교육재정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앙교육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기독교학교가 공교육제도 범위 안에 있고 또 정부의 교육재정 지원을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기독교학교는 설립 주체가 중립을 표방해야 하는 국공립기관이 아니라 공공성을 지향하는 자율적 사립기관이며, 동시에 정부가 사립학교의 교육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종교교육의 포기를 위한 대가가 아니라 사립학교의 공공성 지원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교육재정의 지원을 불모로 하여 사립학교의 학생선발 및 교육과정 편성의 자유를 포기하도록 지나치게 강제하는 것은 공교육제도의 취지를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결국,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종교교육이 한국의 공교육에 부재한 결과, 한국에는 종교인은 많으나 종교의 몰이해가 판을 치고 종교적 갈등이 재생산되며, 종교에 대한 건전한 비판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자를 대상으로 한 자유로운 종교교육이 종립학교에서조차 부재한 결과, 종교교육이 특정종교 강요의 교육이라는 왜곡된 종교교육관이 재생산되고, 건전한 신앙발달교육이 불가능하며, 한국의 종교가 기복적인 종교로 고착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국·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종교교육을, 그리고 기독교학교를 포함한 종립학교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신앙을 기반으로 한 종교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종교교육의 대상과 형식을 다원화하여 격려 및 지도하는 것이 적절하다.

4. 기독교학교의 다양화 및 투명화

기독교학교가 신앙교육의 자유에 따라 학교설립이념인 기독교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성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종교교육을 시행할 수 있을 경우, 기독교학교는 어떤 방향으로 종교교육을 시행할 것인가? 이에 대한 논의는 사실 진부한 논의처럼 보이지만, 오랫동안 종교교육과 관련하여 정부와 종립학교 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교육현실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연구자는 여기서 세 가지 차원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분명한 인식하에, 기독교학교는 학교의 교회화를 지양하면서 오히려 기독교적 가치에 따른 종교교육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독교학교는 비록 기독교정신 위에 세워졌다 할지라도 교회처럼 특정한 신앙을 전수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둔 기관이 아니다. 오히려 학교는 ‘교육’이라는 언어가 의미하듯이 학습자 내면 속에 품고 있는 종교적 열망을 밖으로 이끌어 내지도록 격려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기독교학교는 특정한 기독교신앙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학습자 스스로 기독교의 궁극적 가치에 이르도록 격려하고 ‘교육’(e-ducare)하는 데 보다

더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기독교학교에서 채플(chapel)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종교 강요의 문제는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종교’ 교과목 수업시간에 성경을 공부하는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인 정신적 유산으로서 ‘교양교육’ 차원에서 그 합리적 타당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나, 평준화제도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비기독교학생들에게 강제로 예배(채플)에 참석시키는 것은 종교의 자유와 현실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학적 전제로서 옳은 일인데, 비기독교학생이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를 생각할 때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평준화제도가 개정 혹은 폐지된 이후 종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의 자유가 완전히 구현되었을 때, 의무채플이 시행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비기독교학생들을 위해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독교학교는 신학적 입장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종교교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이 가치중립적인 교육이 아니라 가치지향적인 교육이라고 할 때, 어떤 가치를 지향할 것인가? 이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이다. 다시 말해 어떤 신학적 입장, 어떤 신학적 가치를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형식이 달라진다. 여기서 현대신학의 다양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사실 현대신학은 어느 하나로 획일화할 수 없는 다양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적어도 지난 한 세기 동안 진행된 신학적 논의를 고려할 때, 신학은 정통신학 및 복음주의신학, 자유주의신학, 신통주의신학, 수정주의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생태신학, 동양신학, 토착화신학, 문화신학 등등 다양한 신학이 그 나름의 신학적 타당성을 갖고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학교에서 가르쳐지는 교육 내용은 이러한 신학적 성찰에 따른 가치지향적 교육이어야 한다. 모든 기독교학교가 똑같은 신학적 입장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 종교교육을 수행할 수는 없다. 오히려 학교 설립이념의 다양성과 함께 그 해석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맥락에서 종교교육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기독교도 하나의 역사적 종교라고 할 때, 기독교도 비판적 사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종교교육이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과 교회의 전통, 종교체험 그리고 기독교신학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기회를 학습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기독교가 미신화되거나 기복 종교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독교학교는 행정적 투명성과 함께 경제적 자립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독교학교들이 사회의 구성원들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거부하는 폐쇄적인 단체라는 누명을 쓴 채 공격을 받고 있는 이면에는 기독교학교가 갖고 있는 과거의 행정적 불투명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은 기독교학교들이 행정적으로 부정과 부패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학교들이 종교교사를 비롯한 교사들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보다 공정한 룰에 따라 합리적 절차를 따르고, 교육행정을 실천함에 있어서 ‘정의’와 같은 기독교 정신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독교학교의 교

육재정이 상당부분 정부에 의존해 있는 현실에서 학생선발권 및 교육과정 편성의 자유만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교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기독교학교는 행정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IV.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기독교학교의 대응

앞에서 논의된 것을 토대로 하여 볼 때, 현재 진행 중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은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교육의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구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기독교학교의 대응으로써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국회에 제출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상위법인 교육기본법과 헌법의 정신에 각각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으로 그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하며, 동시에 기독교학교는 종교교육과 관련된 모호한 법 규정들이 일관성 있게 정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사립학교가 특정종교과목을 개설하는 때에는 그 외의 과목을 포함하여 복수로 과목을 편성함으로써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사립학교에게 종교교육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에 명백히 위배된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사립학교에서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이 가능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육기본법 제25조는 정부가 ‘사립학교의 육성’에 대한 책무를 갖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은 교육기본법의 사립학교의 육성의 취지와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종교교육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정교분리의 원칙상 국공립학교에서는 특정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이 금지되지만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은 선교의 자유의 일환으로써 보장된다.”²¹⁾고 선고한 바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헌법 제6조 ‘종교의 자유’에 정면으로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종교의 자유는 한 개인이 임의로 종교를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되지만, 분명한 것은 사회단체가 특정종교를 교육할 수 있는 종교 활동의 자유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교육이란 어디까지나 강요가 아닌 설득적 대화인 한에서 말이다. 결국, 사립학교가 특정종교과목을

21) 『사립학교법 편람』(2003); 대법원판례, 『사립학교의 종교교육』(1989.9.26).

개설할 때 복수로 편성하라는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안은 사립학교가 갖고 있는 고유한 종교교육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인 교육기본법과 헌법의 정신에 위배가 됨으로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고, 관련 법 규정들은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라는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독교학교는 관련 법 규정의 모호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공교육의 차원에서도 매우 시급한 일임으로, 기독교학교는 국·공립학교와의 연대 속에서 종교교육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여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기독교학교는 종교교육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하여 방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기독교학교는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종교교육의 필요성을 알리는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기독교학교는 종교교육의 필요성을 여론화하기 위해 '이중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국·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과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서로 차별화하는 접근이다. 우선 한국 교육제도상 국·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당연히 제7차 종교 교육과정에 따라 중립적인 종교문화적 입장과 종교에 대한 역사비판적인 시각 위에서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보편적인 종교교육을 통해 종교다원사회인 한국사회는 특정 종교 편향적인 문제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재되어 있는 종교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또 종교 본래의 의미인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 학습자들에게 해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반면에 기독교학교를 비롯한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교육의 자유에 따라 학교설립정신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차원이 아닌 학습자의 신앙발달교육의 측면에서 신학적 타당성을 지닌 신앙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설득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교육당국은 궁극적으로 종교교육과 관련하여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분리하는 종교교육정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재 종교교육과 관련하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갈등들은 거의 대부분 평준화제도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현실에서, 기독교학교는 평준화제도의 개정 내지 폐지와 관련된 논의를 관련 단체(교회, 학부모단체 등)와 공동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사실 평준화제도는 지역 간의 교육격차가 심각한 한국의 교육현실에서 그동안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1974년 이후 거의 35년 넘게 지속된 평준화제도는 2009년 현재 많은 개정의 요구를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자립형사립고 등과 같은 학생선발 및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 자유를 누리는 다양한 형태의 특수목적학교들이 지정되고 있고, 또 평준화제도를 거부하는 소위 대안학교조차도 이제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교육 현실 속에서, 과연 전통적인 평준화제도가 얼마나 설득력을 얻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게다가 평준화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헌법이 강조하고 있는 개인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종교교육과 관련하여 볼 때, 개인의 자유의 침해는 매우 심각하다. 왜냐하면 평준화제도는 각 개인의 종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를 배정하고 또

종교적 이유로 전학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평준화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요망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기독교학교의 설립주체들은 설립이념의 구현을 위해 평준화제도의 개정 내지 폐지를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하거나, 정부를 대상으로 위헌소송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평준화제도가 폐지된다할지라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자유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기독교학교는 평준화제도의 개정 내지 폐지를 넘어서 학교의 설립이념에 따라 실제로 종교교육의 자유를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게 구현할 수 있도록 종교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기독교학교의 공공성, 종교자유, 종교 간의 대화, 도덕과 종교, 다문화와 종교, 영성교육, 종교와 예술 등)을 ‘공적 시민교육’의 측면에서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교육과정화 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 하나인 티리히(Paul Tillich)는 종교와 문화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함축적으로 표현한 적이 있다. “종교는 문화의 내용이고, 문화는 종교의 표현이다.”²²⁾ 이 명제는 단순히 종교와 문화와의 관계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종교와 교육과의 관계를 적절히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즉 “종교는 교육의 내용이요, 교육은 종교의 표현이다.” 그렇다. 종교는 교육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가치에 대해 말함으로써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궁극적 질문에 대한 ‘최고의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종교는 교육이 지향하는 모든 교육목적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은 다양한 방식에 따라 종교적 가치를 표현하게 된다. 그래서 교육은 종교적 가르침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교육과정을 통해 어떤 때는 명시적 또 어떤 때에는 잠재적으로 표현한다. 그러한 표현을 통해 교육은 단순한 지식전달교육이나 도구적 기술교육의 한계를 넘어서 자신의 지평을 넘어서는 초월을 지향하게 된다. 결국 교육에서 종교는 교육을 교육되게 하는 궁극적 가치라고 할 때, 종교교육은 앞으로 학교교육에서 결코 축소되거나 배제될 것이라기보다는 더욱 확대되고 격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신낙균 의원 등의 발의로 종교교육과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된 소위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 안’은 폐기되는 것이 적절하고, 그 대신 그에 대한 후속적인 논의가 정부와 학계 그리고 교육현장의 교육자들에 의해 보다 진지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22) Paul Tillich, *Theology of Culture*, ed. by Robert C. Kimball(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9), p.42.

참고문헌

-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 안』 (신낙균 의원 대표발의, 2008.8.21.)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한국기독교학교연맹 및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2008.9.8.).
- 강돈구 외, 『종교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 문화관광부·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강희천, 「기독교학교의 종교 교육과정」, 『현대와 신학』 27,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2002.
- 고병철, 「한국 종교교육의 정황과 방향」, 『종교교육학연구』 21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05.
- 김귀성,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의 개념모형 탐색」, 『종교교육학연구』 21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05.
- _____, 「현행 종교과 교사양성의 실태와 개선방안」, 『종교교사 양성과 평가의 과제』, 한국종교교육학회 2008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08.5.23.
- 대법원판례, 『사립학교의 종교교육』(1989.9.26).
- 박범석, 『교육의 종교성 회복을 위한 통합적 접근』,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_____, 「종교과 중등교원 임용시험 평가영역 상세화 과제」, 『종교교사 양성과 평가의 과제』, 한국종교교육학회 2008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08.5.23.
- 박상진, 『기독교학교교육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6.
- 박재윤 편, 『사립학교법 편람』, 서울: 한국문화사, 2003.
- 법제처, 『교육기본법』, 2008.6.22. 시행.(<http://www.moleg.go.kr/> 2009.10.6. 검색)
- _____, 『대한민국헌법』, 1988.2.25. 시행.(<http://www.moleg.go.kr/> 2009.10.6. 검색)
- 손원영, 「기독교계 중등학교에서의 종교수업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12집,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05.
- _____, 「종교교사 자격기준과 선발의 과제」, 『종교교사 양성과 평가의 과제』, 한국종교교육학회 2008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08.5.23.
- 유위준·김영일, 「교양총론」,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교양)』,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0.
- 유위준·정진홍·김윤성, 「종교」,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교양)』,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0.
- 은준관, 『기독교교육현장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 이재일, 「종교교사 논술형 및 수업능력 평가도구의 개발」, 『종교교사 양성과 평가의 과제』, 한국종교교육학회 2008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08.5.23.
- 정일환·박재윤·황준성·문성모·신지수, 「종교계 사학의 전개과정과 발전방향 탐색: 가톨릭계 학교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25, 한국종교교육학회, 2007.
- 최종성, 「종교교사 1차 시험의 출제 및 평가영역」, 『종교교사 양성과 평가의 과제』, 한국종교교육학회 2008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08.5.23.
- Huebner, Dwayne, "Religious Metaphors", *The Lure of the Transcendent: Collected Essays by Dwayne Huebner*, Edited by Vikki Hillis and Collected & Introduced by William F. Pinar, Mahwah, New Jersey: Lawerns Erlbaum Associates, 1999.
- Palmer, Parker J. *The Company of Strangers: Christian and the Renewal of America's Public Life*, New York: Crossroad, 1991.
- Postman, Neil, *The End of Education: Redefining the Value of School*, New York: Vintage

- Books. 1995.
Simpson, D. P.(Ed.). *Cassell's Latin English Dictionary*.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7.

원고접수: 2010년 1월 5일 1차심사: 1월 24일 게재승인일: 2월 5일

연구자 소개: 손원영

- ① 전공: 신학 / 소속: 서울 기독교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교수
 - ② 관심영역: 기독교 교육
 - ③ 주요논저: 「기독교 교육과정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영국에서의 학교 종교교육에 대한 연구」, 「제7차 교육과정과 기독교학교의 종교교육」
 - ④ E-mail: sohnwo@hanmail.net
-

Abstract

Conflict on Religious Education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in Korea

Sohn, Wonyoung

Seoul Christian University

The aim of this article is critically to investigate the religious education which happens at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in Korea. According to fact that some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of Korea recently have proposed a revised educational bill toward more strong neutral orientation of religious education in all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in Korea, this article deals with three issues by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private school like below. First of all, this essay is to analyses several conflicts about religious education at school including conflict of educational aims, conflict of curriculum, and conflict of educational system of Korea. Second, the common arguments about religious education in academical field are verified in terms of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the meaning of religion and education, harmonious origins and development of Western schools between faith-based Hebrew tradition and rational-based Greek tradition, various types of religious education at school, and administrative transparency of Christian school. Lastly, on the basis of some academical common arguments about religious education at school, this article suggests double strategies for religious education in Korea. In other words, in the educational context where the separation between the state-based school and the private school in Korea is very difficult, for the Christian schools who are interested in their faith education, Christian value-laden religious education is needed; however, for those who are only interested in just value-free religious education like the state-based school it is needed toward the neutral point view of religious education.

Key words: religion-based school, religious education, educational code fo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Korean Constitution, conflict, educational variety